

4.3.18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9. 02. 24.
개정	2016. 06. 23.
전부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6. 02.
개정	2022. 06. 09.
개정	2023. 02.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및 학칙 제39조에 의하여 초당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의 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학위(Joint Degree)”라 함은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양 대학 공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복수학위(Dual Degree)”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관장)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학생선발, 초청·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점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제5조(교육과정공동운영위원회)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제교류교육원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연구처장, 학생성공진흥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교류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06.02., 2022.06.09., 2023.02.0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교 파견학생 및 외국학생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수학·포기 승인
3. 외국학생의 납입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6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본교에서 파견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도 본교와 동일한 기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학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 취득을 위하여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졸업 할 때까지 본교의 학적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자
2. 전 학년 평점평균이 B0(3.0)학점 이상인 자로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외국대학교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자
4.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8조(신청시기 및 서류)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지원자는 수학을 희망하는 외국대학의 학기 개시 6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2. 성적증명서(국/영문)
3.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4. 기타 필요서류

제9조(선발절차 및 인원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한다.
2. 제2차 심사는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언어능력 심사 면접을 실시하되, 외국어능력 심사는 교류국가 외국어능력시험 인증서 또는 성적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선발인원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능력의 판단에 따라 교류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양 대학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본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파견 학생은 매 학기 종료 후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소속 학과의 심사 및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⑤ 기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양 대학교간 협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11조(수학기간 변경)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이 외국대학 수학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수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본교 휴학이 가능하나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휴학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등록 및 학위수여) ① 본교 학생은 외국대학 파견 중에도 본교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기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파견 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학생은 양 대학의 규정에 따라 복수학위 혹은 공동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③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파견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교 간 체결된 협정 또는 각 학과 규정에 따라 본교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등록금 납부 등)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파견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에 각각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학생의 납입금은 양 대학교간의 협정에 의한다.

제14조(협약 및 처리절차) 본교의 학과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국제교류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제15조(지원자격)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학생(이하 “외국학생”이라 한다)은 외국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하며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두 대학의 협정에 의한다.

제16조(선발) ① 외국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정원의외로 선발한다.

② 외국학생의 선발인원 및 선발 방법은 양 대학 간 협정에 의한다.

제17조(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① 외국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학생의 학점 취득은 본교의 학칙 등 제규정에 따른다.

제18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의뢰서와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상고: 부모 5일, 조·외조부모 3일(사망신고서)
2. 본인결혼: 10일 이내(청첩장)
3. 공무: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참여 기간(관련 공문)
4. 본인 입원 또는 전염성 질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치료기간(진단 확인가능 서류)

제19조(학사지도 및 관리) ① 외국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외국대학과 본교의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교육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학생의 휴학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휴학 신청 후 7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③ 외국학생이 개인사정으로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자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퇴 신청 후 7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④ 외국학생도 본교 학생과 동일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⑤ 외국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등 제규정에 따른다.

제20조(등록금 납부) ① 외국학생은 매 학기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방법은 학칙 제23조에 따른다.

- ②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정 이수) 외국학생은 두 대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졸업요건)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은 본교의 최소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학위 취득에 관한 졸업요건은 학칙과 해당 협정에 의한다.

제23조(보칙) ① 외국 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양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이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